

주 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295번길 68-39

받는사람 (주)비에스에이

귀하

31413

## [V] 고용보험 [V] 산재보험

[V] 보험관계 성립 [ ] 보험가입 승인 [ ] 보험가입 불승인 통지서 [ ] 일괄적용 개시필 통지서

문서번호

가입지원부-56654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	574-87-01379-0
사업주 (대표자)	성명 권정준 주소 17848 경기 평택시 서재로 36 103동 402호 (동삭동, 서재자이아파트)
사업장	상호·법인명 (주)비에스에이 공사명 소재지 31413 충남 아산시 음봉면 연암울금로295번길 68-39
고용보험	[V]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년월일 2019-08-01 고용보험업종코드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재보험	[V] 근로자 종사 사업(장)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성립(개시)년월일 2019-08-01 산재보험업종코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대규모 기업	[ ] 해당 [V] 비해당
불승인한 경우 그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설공사가 아닌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현장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인)



2024년 10월 17일

기안자( 담당 / 4급 ) 김대기 검토자( / ) 결재권자( 팀장 / 3급 ) 도문섭  
협조자

시행 20190820

우 3116/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7,8층 (불당동) / www.comwel.or.kr

전화 042-820-5454

팩스 0505-544-2100

/ kdk0914@comwel.or.kr

/공개

# 안 내 문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kcomwel.or.kr

## 고용·산재보험의 신고와 납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월별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고지하며, 그 달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text{월별보험료} = (\text{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 \times \text{해당 보험료율}) \text{의 합산액}$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포함), 사업의 기간(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6조 따라 사업주가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날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

## 적용단위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점, 지점, 출장소 등은 별도의 보험관계로 가입 / 해외파견자는 사업주의 가입신청에 따라 임의가입  
 ※ 다만 사업주 및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 일괄적용 승인신청에 따라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당연(의무)일괄적용 대상으로 건설업자 등록일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건설업자의 범위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아래의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설공사 및 별목업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대수선의 경우 200㎡)를 초과하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축(대수선)공사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기타 공사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후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요양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 근로자 채용(이직) 시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서」를,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입직(이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4.1.1.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도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이며, 일용 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10일 이상 근로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납부대상이 됩니다.

##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안내

- 가입대상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 별목업은 별목 재적량이 2,700㎡ 미만)에 근무하는 월평균보수 14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60%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안내

사장님은 부담금이 손비처리되어 좋고!

근로자는 퇴직금 체불걱정없어 좋고!

30인 이하 사업장은  
운영관리수도가 저렴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  
정답입니다!

가입 문의 **1661-0075**

검색창에 쳐보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www.moel.go.kr](http://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http://www.kcomwel.or.kr)

사장님의 경쟁력 향상부터 훈련수당, 실업급여까지!  
고용보험이 사장님들에게도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 부담은 적게!

기준보수 등급 중 본인의 여건에 맞추어 납입이 가능합니다.

#### ● 혜택은 많게!

-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실업급여 지원

#### ● 신청은 어떻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세요.

#### ● 가입은 언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입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